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4
------------	-----

제출연월일 : 2009. 2.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 개정 · 시행(2008. 8. 3)으로 비료 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 업무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제3조 관련 [별표 1] 중 일부 개정

자. 농림관계 신설

- (1) 비료생산업 등록 - 수수료 건당 40,000원
- (2) 비료수입업 신고 - 수수료 건당 20,000원

3.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5항
- 「비료관리법」 제12조 제3항

4. 개정안 및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8.12.11 ~ 12.3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1】의 제2호 중 “농림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2. 인가 · 허가 · 신고 · 신청 · 등록 · 지정 · 확인 등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40,000 1건 2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h>수수료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증명등 가.~바(생략)</td> <td></td> <td></td> <td></td></tr> <tr> <td>2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가.~아(생략) <u>(신설)</u></td> <td></td> <td></td> <td></td></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수수료 (원)	비 고	1.증명등 가.~바(생략)				2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가.~아(생략) <u>(신설)</u>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준</th> <th>수수료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증명등 가.~바(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tr> <tr> <td>2(현행과 같음) 가.~아(현행과 같음) <u>자. 농림관계</u> <u>(1) 비료생산업 등록</u> <u>(2) 비료수입업 신고</u></td> <td></td> <td></td> <td></td></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비 고	1.증명등 가.~바(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가.~아(현행과 같음) <u>자. 농림관계</u> <u>(1) 비료생산업 등록</u> <u>(2) 비료수입업 신고</u>			
구 분	기 준	수수료 (원)	비 고																												
1.증명등 가.~바(생략)																															
2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가.~아(생략) <u>(신설)</u>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비 고																												
1.증명등 가.~바(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가.~아(현행과 같음) <u>자. 농림관계</u> <u>(1) 비료생산업 등록</u> <u>(2) 비료수입업 신고</u>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 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2007.8.3>
- ② 삭제<1999.3.31>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3.31>
-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 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7.8.3>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개정 1999.3.31>)

-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74)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2. 3(수)

나. 제출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09. 2. 6(금)

라. 위원회 상정 : 2009. 2. 17(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비료관리법」 개정·시행(2008. 8. 3)으로 비료 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4. 주요골자

제3조 관련 [별표 1] 중 일부 개정

자. 농림관계 신설

(1) 비료생산업 등록 - 수수료 건당 4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 수수료 건당 20,000원

5.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5항
- 「비료관리법」 제12조 제3항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 본 조례는

- 비료관리법 개정 · 시행(개정 2007.8.3, 시행 2008.8.3)으로 시 · 도지사 업무였던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 업무가 시장 · 군수 · 구청장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 이에따른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의 정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 다만,

-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는 건당 4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는 건당 2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 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했는지 이에대한 설명이 요구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